

2024.04.01기준

2024학년도 안전관리계획

금강대학교



금강대학교
GEUMGANG UNIVERSITY

목 차

□ 2024년 안전관리계획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개요 | 3 |
| 1. 목적 및 방향 | 3 |
| 2. 조직의 구성 및 운영 | 4 |
| II. 유형별 상황 조치 및 대응 | 6 |
| 1. 자연재난 | 6 |
| 2. 안전사고 | 10 |
| 3. 감염병 | 15 |
| III.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| 16 |
| IV. 안전교육 | 17 |
| IV. 유관기관 연락체계 | 18 |

I 개요

1 목적 및 방향

□ 관련법령

「고등교육법」 제27조의 2(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

-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, 안전사고, 감염병의 확산,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,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 - 1.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
 - 2.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
 - 3.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
 - 4.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
 - 5.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
 - 6.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·외 협력체계 구축
 - 7.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
 - 8.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목적

-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각종 유해 위험요인 점검
- 예방을 통해 각종 재난 및 사고 요인 최소화
- 상황 발생 시 행동지침 및 요령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능력 제고
- 교내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의식 제고

□ 방향

- 우리학교 내 모든 구성원을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안전 경영 방침 수립
- 컨트롤타워를 통해 명확한 업무처리
-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
- 우리대학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한 인원 확보 노력
- 안전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

2 조직의 구성 및 운영

2.1. 학교 현황

□ 일반현황

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
| 학교명 | 금강대학교 | 설립구분 | 사립 |
| 주 소 |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| 홈페이지 | www.ggu.ac.kr |
| 전 화 | 041)731-3114 | 총 장 | 서 문 성 |

□ 교직원 및 학생현황

○ 교직원 및 학생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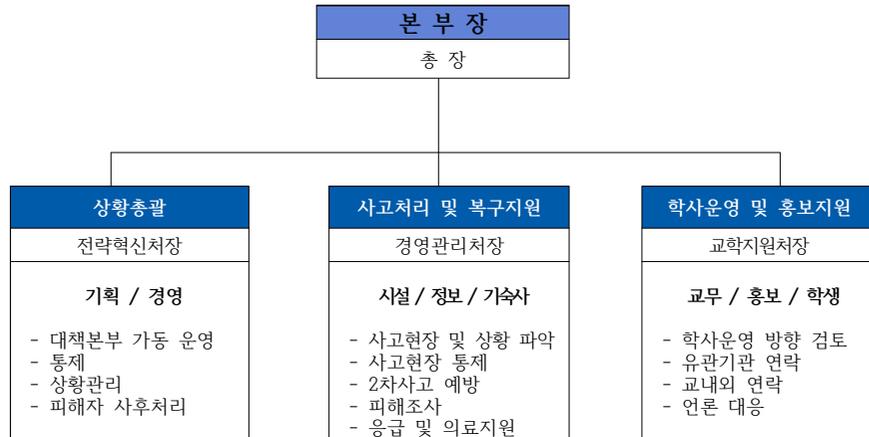
| 학부생 | 대학원생 | | 교원 | | | 직원 | | 총합 |
|-----|------|----|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
| | 석사 | 박사 | 전임교원 | 비전임교원 | 강사 | 정규직 | 계약직 | |
| 154 | 7 | 9 | 11 | 18 | 13 | 20 | 4 | 236 |

○ 캠퍼스 배치도



2.2. 재난안전관리 운영방안

□ 재난안전관리본부 조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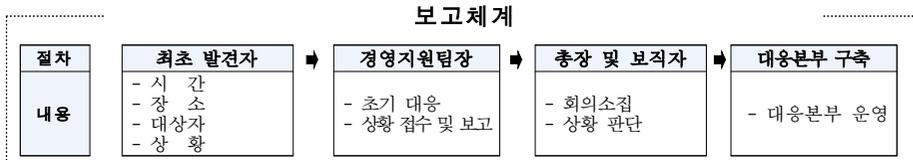


* 인력 및 물자 지원 : 교수학습, 교육역량, 취업지원, 대학원

* 관련 기사 및 자료 수집 : 비서실, 도서관

□ 보고체계

-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



□ 업무담당 및 연락망

| 유형 | 구분 | 담당부서 | 연락처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안전사고 | 화재 | 시설관리팀 | 041)731-3341~5 | |
| | 정전 | | | |
| | 엘리베이터 | | | |
| | 건축물 | | | |
| 자연재난 | 지진 | 시설관리팀 | 041)731-3341~5 | |
| | 대기 | | | |
| | 폭염 | | | |
| | 태풍 | | | |
| 학생 | 식중독 | 경영지원처 | 041)731-3311~4 | |
| | 감염병 | 기숙사 | 041)731-3063 | |
| 사이버 | | 정보지원팀 | 041)731-3351, 3353 | |

II

유형별 상황 조치 및 대응

1

자연재난

□ 위험요인

- 태풍: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/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
 -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, 해일, 호우,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, 산사태,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,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·물적 피해 발생
- 호우 :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
 -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, 대학 시설물 붕괴·매몰 위험 및 운동장,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
- 대설 :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
 -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
- 지진 :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 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
 -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,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 라인(life-line)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

□ 예방 및 대응, 재발방지

- 예방·대비 단계 추진계획

1. 예방교육
 -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
 - 학생,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
2. 홍보활동
 -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,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 활동
3. 재난대응훈련
 - 재난유형별 교육·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
 -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

○ 대응·조치 단계 추진계획

1.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

- 재난사고 대비·대응 체계(상황 관리체계) 구축·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(관심-주의-경계-심각) 및 재난단계별 보고·전파
-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(정·부) 지정 관리

2.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·대응

- 1단계 : 관심, 주의단계

-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
- 비상연락망 점검, 당직실,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

- 2단계 : 경계단계

-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
-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
-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/ 부서별 협의(긴급 대피, 홍보 등)
-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
- 경찰서,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
-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

- 3단계 : 심각단계

-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
-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대학합동상황실 운영
-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
-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, 유관기관 협의

3. 재난상황보고·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·운영

-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·전파 체계 가동
-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, 학생,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
- 대학교 캠퍼스 내·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·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(캠퍼스 시설 등)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

○ 수습·복구 단계 추진계획

1. 피해조사

-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
- 재난피해 조사서 대상 작성
- 피해복구계획(안)과 인적·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
- ※ 피해조사결과를 교육부에 제출 (피해신고)

2.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

-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
- 피해복구계획(안)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

3. 사상자 대책

- 부상자 치료대책

- 의료반의 편성·운영
- 보건소,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·운영
-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·의원으로 후송
-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
-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

- 사망자 대책

-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
-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
-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(장례비, 유족배상 등)
- 보상금 지급·정산

- 구호활동

-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·운영
-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·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
-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
-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,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

4. 현장복구

-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·관·군의 협조로 복구
-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,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

5.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

-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
- 도출된 개선사항은 '대학 안전관리계획'에 반영하여 보완·추진

2 안전사고

□ 위험요인

- **학교안전사고** : 수업,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·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

□ 예방 및 대응, 재발방지

- 예방·대비 단계 추진계획(사고유형별 예방·관리)

1. 교내 교통안전

-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, 안전점검, 유지관리

-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·개선
- 보행자·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
-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
-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·개선
-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·관리
-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,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,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·관리
-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, 걸리거나, 부딪치거나, 헛 딴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·관리
-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·관리
-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·관리
-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·적재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
-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, 과속방지시설의 설치·관리
-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·관리
-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,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·관리

-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(personal mobility) 이용 규정화

2. 학생 집단활동 안전

-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, 참가자, 규모, 지역, 활동(프로그램)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,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

< 작성예 : 모니터링 및 평가 >

- **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**
 -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
 - 재난(사고)에 대한 모니터링, 피해현황 측정,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
 -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
 - 사전 재난(사고)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
 -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
 - 지속적인 수정 및 보
- **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**
 - 각 대학의 지리적·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(사고)현황 사전 중점 분석
 - 각 대학의 재난(사고)관리 정책의 적절성·시의성 및 준수 여부
 - 재난(사고) 발생 후, 재난(사고)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
- **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·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(사고)발생 매뉴얼에 반영**
- **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·제거,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**

※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

- **예방** : 재난·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·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
 - ※「재난안전법」제4장 재난의 예방(제25조의2~제33조의3) 관련
- **대비** : 재난·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, 준비, 교육, 훈련함으로써 재난·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·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
 - ※「재난안전법」제5장 재난의 대비(제34조~제35조) 관련
- **대응** : 재난·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,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
 - ※「재난안전법」제6장 재난의 대응(제36조~제57조) 관련
- **복구** : 재난·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·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,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
 - ※「재난안전법」제7장 재난의 복구(제58조~제66조의3) 관련

-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, 조직, 단체의 장, 기획자, 인솔자,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
-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
-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
-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
- 보험가입
-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
-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
-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
- 숙박 및 식사 안전

-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장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·평가·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

* (포함사항) 방문지역, 수행 활동, 인솔자와 참가자 등

3. 행사 안전

-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

- 입학식,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·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
-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, 장소와 배치 설계, 의료진, 비상계획과 경비, 커뮤니케이션, 교통,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「행사 안전계획서」를 작성
-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, 위험성 관리방안, 안전점검사항, 행사 예상 참가 인원, 행사 관련 계약업체,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·확인 후 승인
-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·조직·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, 장비 등 제공
-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
- 비상 시 신속한 대피·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,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, 비상 집합장소 지정, 신속한 사고신고·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
- 행사 시 전기안전, 식품안전,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

4. 생활 안전

- 학생, 교직원,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* 이용자의 미끄러짐·헛디딤·걸림·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 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

* 강의실, 강당, 도서관, 식당, 사무실/회의실, 공용공간(현관/복도/계단/화장실), 운동장, 옥외 공간(조경시설), 옥외 조형물 등

- 교내 체육시설,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

-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,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

5.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

-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

-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
-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
- 비상연락망 편성·관리 및 안내·배포
-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·훈련 제공 지원

○ 대응·조치 단계 계획

1. 안전확인 및 조치

-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·신고

- 사고,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
-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·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
-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
- 필요한 경우, 112 또는 119에 신고

2.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

-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위급상황을 연락·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

- '심각'(빨간색), '경계'(주황색)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 및 교육부에 보고
- '주의'(노란색)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총장에게 보고
- '관심'(파란색)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총장이 관리

< 사고등급평가 매트릭스 >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유아·초·중·고·대학·연구·미진·연구·스포츠·관련·행위·심 | <p>극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상황) 정상적인 학교운영 중단 및 (또는)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추가적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▪ (규모) 대규모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
| | <p>중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상황) 학교운영에 전반적 지장 및 (또는) 112 또는 119 신고를 통한 개입 요청이 필요한 행위 발생 ▪ (규모) 많은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| 경 계 | 경 계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 심 각 |
| | <p>중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상황) 학교운영의 중요 기능의 일시적 지장 및 (또는) 112 또는 119 신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▪ (규모) 다수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| 경 계 | 경 계 | 경 계 | 경 계 | 심 각 | 심 각 |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|------|
| 가장 피해 규모 | <p>경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황) 단순 조치에 의한 학교운영 정상화가 가능 및(또는) 112 또는 119 신고할 수 있는 행위 발생 (규모) 몇몇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| 주의 | 주의 | 주의 | 경계 | 경계 | 심각 |
| | <p>사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황) 학교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경미한 지장 및(또는) 교직원의 개인과 학교장 보고가 필요한 행위 발생 (규모) 1명의 학생 또는 교직원 관련 사고 | 관심 | 관심 | 주의 | 경계 | 경계 | 심각 |
| | <p>없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상황) 학교운영에 영향이 없고, 112 또는 119 신고와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고 | | 관심 | 주의 | 경계 | 경계 | 심각 |
| 사고 등급평가 매트릭스 |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없음 | 응급처치 | | 통원치료 | 입원치료 | 사망 | 연구장애 |
| | | 사고 스트레스/ 트라우마에 대한 주변의 지원 | | | | | |
| | | 사소 | 경미 | 중간 | 중대 | 극심 | |
| 요인 1. 학생 및(또는) 교직원의 안전에 대한 영향 | | | | | | | |

※ 자동적으로 '심각' 등급을 받는 사고(또는 위급상황)

- ① 교육활동 중 사고 :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
- ② 교육활동 외 사고 :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
- ③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, 붕괴, 폭발 사고 등
- ④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
- ⑤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
- ⑥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·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

○ 수습·복구 단계 추진계획

1. 복구 실행 및 지원

-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(또는 위급상황)에 대한 조치·지원

-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·시행
-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

- 피해자에 대한 치료, 상담,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

2. 사고 조사

- 사고(또는 위급상황)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, 보직자, 안전·보건담당자, 피해자(또는 보호자),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(지원)팀 구성·운영

-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(preliminary screening) :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
- ※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: △(관심·주의) 대학의 기관, 조직, 단체의 장 △(경계·심각) 학교장
- 사고(또는 위급상황)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
-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

2. 사고 검토

- 사고(또는 위급상황)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,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·시행
- '주의', '경계', '심각' 등급 사고(또는 위급상황)의 경우, 총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·시행

- (물리적 차원) 시설, 기계,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 방지책
- (조직적 차원) 안전관리상의 규정, 절차,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·절차·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
- (교육적 차원)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·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

-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. 단,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

3. 사고 종결

- 사건 종결은 사고(또는 위급상황)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거나,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

<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(기관) >

| 사건 종결 권한 | 사고 심각성 등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대학의 기관, 조직, 집단의 장 | 관심 (파란색) |
| | 주의 (노란색) |
| 학교장(대학의 기관, 조직, 집단의 장과 협의) | 경계 (주황색) |
| 교육부장관(학교장과 협의) | 심각 (빨간색) |

3 감염병

위험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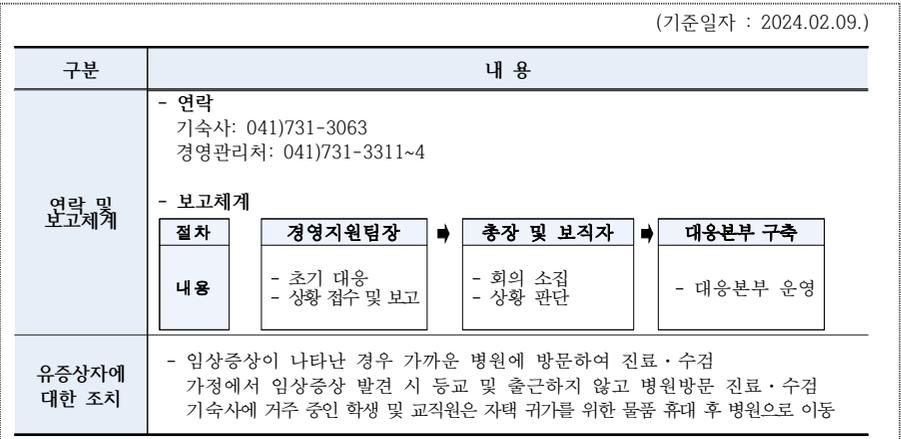
○ **호흡기 질환**(인플루엔자 등) : 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은 가장 이환율이 높은 질병이며 모든 감염질환 발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

예방 및 대응, 재발방지

○ 예방·대비 단계 추진계획

1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내
 -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감염병 관련 최신 정보 및 국가·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·교직원 등에 안내
 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
 - 손 씻기, 기침예절 준수,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·홍보 실시
 - 학생, 교직원 등이 등교(출근)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(지도교수, 복무담당자 등)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
2. 감염병 대비를 위한 조치
 - 실내 공간 수시로 환기하기 (하루에 최소 3회, 매회 10분 이상)
 - 손이 자주 닿는 표면과 물건(예. 문손잡이, 전등스위치, 키보드 등) 소독하기
 - 감염병 발생 시 비상연락망 및 보고체계 구축

○ 대응·조치 단계 추진계획



- 학생·교직원이 의심증상 발생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,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
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 및 교직원 중 귀가가 어려운 경우 기숙사 내에서 격리조치

※ **상황 발생 시**, 상세 조치사항은 학내 보건안내 게시판 공지 예정

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

건물 보험

(단위 : 원)

| 기준연도 | 보험명 | 계약일자 | 만료일자 | 연간보험료 | 비고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2024년 | 재산종합보험 | 2024.04.30. | 2025.04.30. | 8,057,925 | |

학생 보험

(단위 : 원)

| 기준연도 | 보험명 | 계약일자 | 만료일자 | 연간보험료 | 비고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|
| 2024년 | 대학종합보험 | 2024.06.01. | 2025.06.01. | 983,660 | |

보상한도

(단위 : 원)

| 기준연도 | 보험명 | 보상 내용 | 보상 한도액 | 비고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
| 2024년 | 재산종합보험 | 재산종합위험담보 | 89,005,964,261 | |
| | | 기계위험 담보 | 1,000,000 | |
| | 대학종합보험 | 학교시설배상책임(대인) | 100,000,000 | |
| | | 학교시설배상책임(대물) | 10,000,000 | |
| | | 치료비 | 3,000,000 | |

| | | | |
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신입생 OT 치료비 | 3,000,000 | |
| | 교직원배상책임(대인) | 100,000,000 | |
| | 교직원배상책임(대물) | 10,000,000 | |

IV 안전교육

□ 관련규정

「금강대학교 취업규칙」

제 56조(예방교육의 실시)

본 대학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교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, 성희롱 예방을 위한 본 대학교의 방침,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.

제61조(안전보건 교육)

본 대학교는 교직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, 채용 시의 교육, 작업 내용 변경 시의 교육,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교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.

제65조(법정교육훈련의 실시)

① 본 대학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에 따라 이 규칙 제56조 성희롱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 성폭력예방교육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의 가정폭력예방교육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평등의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본 대학교는 이 규칙 제61조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1조에 따라 안전·보건 교육을 실시한다.

③ 본 대학교는 이 규칙 제60조와 관련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.

④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.

⑤ 이 규칙 53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.

□ 관련 교육운영 결과보고

| 연번 | 교육내용 | 교육방법 | 교육횟수 | 운영시간 | 비고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1 | 소방훈련 | 소방합동훈련 (대면 훈련) | 년 1회 | 1시간 | 직원, 학생 대상 |
| 2 | 소방훈련 | 소방 비상대피훈련 (비대면 훈련) | 년 1회 | 1시간 | 직원, 학생 대상 |
| 3 | 안전한국훈련 | 재난교육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| 년 1회 | 안전한국훈련 기간 | 직원, 학생 대상 |
| 4 | 안전보건 교육 |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 따른 제반 교육 실시 | 수시 | 1시간 | 직원 대상 |

V 유관기관 연락체계

○ 유관기관 현황

| 연번 | 기관명 | 해당기관 | 담당자 전화번호 | 비고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| 논산소방서 | 상월면119지구대 | 041-736-5119 | |
| 2 | 반월119안전센터 | 119안전센터 | 041-730-0402 | |
| 3 | 논산경찰서 | 상월파출소 | 041-746-3879 | |
| 4 | 논산시청 | 상월면사무소 | 041-746-8672 | |
| 5 | 한국전기안전공사 | 충남남부지사 | 041-912-3250 | |
| 6 | 한국가스안전공사 | 대전세종지역본부 | 042-485-0019 | |
| 7 | 한국전력공사 | 논산지사 | 041-123 | 대표번호 |
| 8 | 백제병원 | 원무과 | 041-730-8888 | |
| 9 | 건양대학교병원 | 권역의료응급센터 | 042-600-9119 | |
| 10 | 논산시 보건소 | 감염병 대응팀 | 041-746-6712~6727 | |
| 11 | 논산시 보건소 | 방역팀 | 041-746-8041~3 | |